합법적 소득원

뉴욕 시 인권법에 따른 보호조치

공공 지원금과 주택 바우처는 항상 임대료 및 보증금으로 산입합니다

뉴욕 시 인권위원회는 주거와 관련하여 합법적 소득원에 따른 차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합니다. "합법적 소득원"은 뉴욕 시 인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 범주이며 여기에는 섹션 8, 지역사회 내 거주(LINC), 생활보조금(SSI), HIV/에이즈 서비스 관리(HASA), 가정 퇴거 방지 보조금(FEPS), 특별 퇴소 및 예방 보조(SEPS), 제대군인 원호 등을 비롯하여 임대료 지불에 대한 연방, 주 또는 지방의 공공 또는 주거 지원금이 포함됩니다.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보증금과 일회성 긴급 보조금("원 샷 딜")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.

본 위원회는 NYC 인권법의 시행 및 교육을 통해 뉴욕시에서 가장 취약한 커뮤니티도 주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. 본 위원회는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그들의 차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나 예비 세입자에게 손해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여러분이 알아야 할 5가지 사실:

1. **6개 이상 가구(유닛)가 있는 건물에 거주하거나 임차를 고려 중인 경우 보호 대상입니다.**[1]
2. **중개인과 임대인, 기타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공 지원의 형태로 임대료나 보증금을 지불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세입 신청을 막을 수 없습니다.** 공공 지원이나 바우처 소득은 세입 신청 시 자격 미달의 사유가 되거나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.
3. **"바우처 사용 불가" 광고는 불법입니다.** 임대주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온라인이나 인쇄물 또는 방송으로 공공 지원이나 주택 지원 프로그램 또는 바우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.
4. 임대주는 세입자가 공공 또는 주택 지원의 형태로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이유로 **집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.**
5. **세입자는 보호 대상이라는 지위에 근거해 괴롭힘, 차별, 또는 위협적인 언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,** 여기에는 같은 건물 내 다른 세입자의 행동이나 언사도 포함됩니다.

합법적 소득원을 이유로 한 차별이 담긴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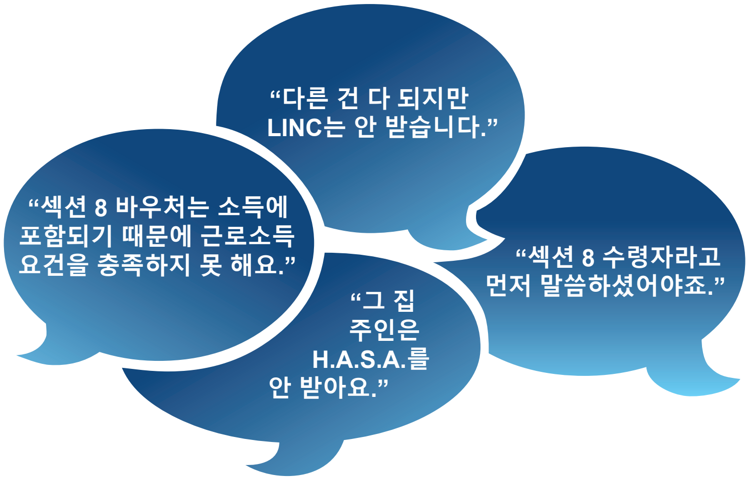

합법적 소득원을 이유로 한 차별을 당하셨다면 신고하십시오. 311번으로 전화해 인권위원회 연결을 요청하여 뉴욕 시 인권위원회에 연락하거나 인권위원회 인포라인에 (718) 722-3131번으로 전화하십시오.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공정 주택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하시려면 NYC.gov/HumanRights를 참고하십시오.

---

1 (i) 공공 부조를 받지 않은 채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가족이 함께 사는 유닛에서 방 하나를 임대하는 경우, 그리고 (ii) 공공 부조를 받지 않는 2 세대용 건물에 있는 한 유닛의 임대의 경우,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가족이 한 유닛에서 함께 거주하고 임대 유닛이 공개적으로 광고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. 이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. 건물이 예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본 위원회에 연락하여 문의하십시오!